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385

발의연월일: 2022. 4. 25.

발 의 자:최인호·위성곤·이원택

서영교・노웅래・유기홍

한준호 • 박상혁 • 김병기

서동용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.

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기반 산업으로, 외국 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할 경우 이들에 의한 수산종자의 대량생산, 종자 매입 및 방류사업 참여 등이 국내 수 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존재 함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.

이에 양식 어업인을 보호하고,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생산·유통 및 수급 등을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「양식산업발 전법」의 외국인에 대한 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(안 제27 조). 법률 제 호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 전단 중 "제18조, 제20조"를 "제18조부터 제20조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「양식산업발전법」의 준	제27조(「양식산업발전법」의 준
용)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	용)
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	
고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3	
조제2항, <u>제18조, 제20조</u> , 제26	<u>제18</u> 조부터 제20조까지
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	
준용한다. 이 경우 "면허"는	,l
"허가"로, "한정양식업면허"는	
"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"로,	
"양식업"은 "수산종자생산업"으	
로, "면허기간"은 "허가기간"으	
로, "면허권자"는 "허가권자"로,	
"양식업권자"는 "수산종자생산	
업허가를 받은 자"로, "양식장"	
은 "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	
은 수면"으로 본다.	